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64

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문금주·윤준병·임미애

어기구 · 임호선 · 이원택

이병진 · 서삼석 · 허 영

송옥주 • 조인철 • 주철현

박수현 • 박 정 • 강준현

박희승 • 채현일 • 김영배

장종태 · 오세희 · 민형배

이재관 · 양부남 의원

(239])

제안이유

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,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.

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, 호주, 유럽 등과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 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,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 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.

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,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,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 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,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 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(안 제9조).
- 라.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,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(안제10조).
- 마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

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,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- 바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- 사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 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아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·기술· 재무·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시 우 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.
- 자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,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 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(안 제19조).
- 차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,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22조).
- 카.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23조).

법률 제 호
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,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한우"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.
- 2. "한우농가"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.
- 3. "한우산업"이란 한우의 생산·사육·가공·포장·보관·수송·유통·판매·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

합적인 시책을 수립 ·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한우농가는 한우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사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

제2장 한우산업의 육성

- 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 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"종 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
 - 3.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
 - 4. 한우 유통・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
 - 5.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
 - 6.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 생산에 관한 사항

- 7.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
- 8.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
- 9.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
- 10.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 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 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- 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한우산업과 관련된 생산·유통·가공·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「통계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연구·개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 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한우의 품종육성 및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
 - 2.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

- 3.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
- 4.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·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한우의 생산·사육·유통·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한우산업발전협의회) ①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이라 한다)를 둔다.

- 1.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
- 2.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
- 3.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
- 4.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
- 5.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
- 2.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
- 3.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
- 4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
- 5. 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
- 6.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,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조(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)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
 - 2.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
 - 3. 저메탄 사료 지원
 - 4. 한우의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
 - 5.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장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

- 제11조(한우의 수급조절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(이하 "한우수급정책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 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·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도축·출하장려금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

-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경영비용 부담 완화)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백신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경영개선자금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(이하 "경영개선자금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(이하 "경영개선계획"이라 한다)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
 - 2. 한우의 사육 방법
 - 3.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
 - 4.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
 - 5.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, 타당성 검토, 통보의 절차·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.
 - 1.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
 - 2.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
 - 3.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
 - 4.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 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.
- 제16조(소규모 한우농가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 우농가(거주, 생계,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경영·기술·재무·

- 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부산물의 활용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·가공· 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·개발을 추진하고 체 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 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소비촉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 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,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제19조(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1.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
 - 2.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
 - 3.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
 - 4.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
- 제20조(도축・가공시설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

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·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 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1조(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 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야 한다.
- 제22조(수출기반조성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해외개척,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
 - 2.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·훈련
 - 3.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
 - 4.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
 - 5.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제23조(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) ① 기업이 한우 생산업 에 진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생산자와 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장 보칙

- 제2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 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